

**UPDATES** 법률정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공정위의 첫번째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4년 적용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시행 노동관계법 규정  
 방송분야 규제 환경 변화 가속화  
 종업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판결

**CASES** 업무사례

- GS, STX에너지 지분 취득
- 도레이첨단소재, 웅진케미칼 지분 취득
- IMM PE, 티브로드홀딩스에 투자
- 우리은행, Bank Saudara 지분 취득
- Corning과 삼성디스플레이, 상호 지분 취득
- S-Oil,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석유비축기지 부지 매입
- 사업지주회사는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트위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NEWS** 새소식

- 5개 분야 선두 로펌 선정, 27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4
- 12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IFLR Asia Awards 2014
- 공정거래분야 “Regional Firm of the Year” 수상 - GCR Awards 2014
- 국제중재 분야 국내 1위 선정 - GAR 100 (2014)
-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4년 1분기 M&A 리그테이블
- M&A 법률자문 부문 수상 - 제5회 한국IB대상
- 기업금융 부문 우수자문사 선정 - 제16회 매경증권인상
- 정화수, 최경선 미국변호사 수상 - The Asian Lawyer All-Star Legal Awards 2014

환경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를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사고기업의 경우 배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을 하는 등 심각한 손실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나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 및 보험제도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산업계,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이완영 의원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산업부와 산업계가 3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2013년 12월 16일 환경부와 산업부가 융합행정협의회를 통해 위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

이슈	주요 내용
가해자 무과실책임 부과 및 배상책임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유발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부과</li> <li>• 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한도(2천억원)설정,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li> <li>•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령위반의 경우는 예외</li> </ul>
책임대상 시설 및 피해배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등 오염유발시설</li> <li>• 피해배상 범위: 제3자 인적, 물적 피해</li> </ul>
피해자 입증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유발시설 설치 및 운영,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li> <li>•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 관련 정보 청구 및 열람권 부여</li> </ul>
환경오염피해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화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li> <li>• 가입금액: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최저금액 규정</li> </ul>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원인자불명·부존재·무능력 피해, 배상한도 초과 피해 보상</li> <li>• 재원: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기금운용수익</li> </ul>

## 향후 계획

- 정부는 2014년 6월까지 위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2월에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14년 12월까지 보험요율의 산정, 약관 개발 및 환경오염피해평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 보험가입자 관리, 행정처분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한 보험운영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의무적인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나 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mailto:yjlee@kimchang.com), 박정환 변호사 [jeonghwan.park@kimchang.com](mailto:jeonghwan.park@kimchang.com)

## 보험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및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킹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 개인정보의 ‘수집 - 보유·활용 - 파기’의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 (2) CEO의 책임 강화 등 유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확실히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3) 해킹 등의 외부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 체계 강화 및 (4) 이미 외부에 제공되거나 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입니다.

특히, 금번 대책발표에 따르면, 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을 매년 작성하여 CEO 및 이사회가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감독당국에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CEO 등의 책임을 강화
- 모집인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유출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엄정한 책임을 부과
-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에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형벌수준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며,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강화

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T/F’를 통해 금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위 종합대책을 통하여 정보유출 및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 제재를 재차 천명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각종 단계별 관련 법령의 준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출 모집인 및 제3자들에 대한 관리실태의 주기적 점검 및 그 점검결과의 적절한 기록화(documentation),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대응매뉴얼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박웅 변호사 [wpark@kimchang.com](mailto:wpark@kimchang.com), 백영화 변호사 [yhpaik@kimchang.com](mailto:yhpaik@kimchang.com), 최병민 변호사 [byungmin.choi@kimchang.com](mailto:byungmin.choi@kimchang.com)

공정거래

## 공정위의 첫번째 동의를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3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네이버 및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통칭하여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대하여 동의를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과징금 부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의를결제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는지,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하였는지 등이 쟁점이 되어 왔는바, 이번 결정은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동태적 혁신시장에서, 동의를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동의를결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안으로서, 동의를결제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나 고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 적용될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네이버를 대리하였습니다.

박성업 변호사 [separk@kimchang.com](mailto: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mailto:taehyuk.ko@kimchang.com)

## 공정거래

#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가중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감경상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4년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대상 확대

-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범위반 사업자의 기준이 현행 과징금고시상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어 가중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감경사유 세분화 및 감경상한 축소

-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이 30%에서 20%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부득이하게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는 30%의 상한이 유지됩니다.
-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협력을 한 경우 그 감경상한을 15%에서 10%로 축소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영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사유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었습니다.
- 자진시정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자진시정의 정의를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엄격히 하였습니다. 특히, 위반행위의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상한은 30%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 과징금 납부시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mailto: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mailto:taehyuk.ko@kimchang.com)

조세 일반

## 2014년 적용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2014년 2월 21일 세법 시행령을, 동년 3월 14일 세법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가능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1)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 환율과 (2)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 환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선택한 환율을 이후 변경할 수 없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율을 선택한 후 5년이 지나면 선택한 환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중 하나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

법인이 분할을 할 때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1) 최대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또는 (2)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신설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여 중견기업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mailto: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mailto:bmjung@kimchang.com), 서재훈 회계사 [jaehun.suh@kimchang.com](mailto:jaehun.suh@kimchang.com)

인사·노무

# 2014년 시행 노동관계법 규정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부칙 제2조).

현행	변경 내용
- 출산 전후 휴가 90일	- 출산 전후 휴가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 유급휴가 60일	- 유급휴가 75일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이 제도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4년 9월 25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 기존 판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소위 ‘법내 초과근로’), 사용자는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9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부칙 제2조).
- 2014년 9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성격의 금전적 배상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부칙 제3조).

- 2014년 9월 19일부터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이 확대됩니다(기간제법 제15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 2014년 9월 19일부터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배상제도 및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도가 시행됩니다(파견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2014년 1월 14일부터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을 의무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 2014년 1월 14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범위가 현행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조정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mailto: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mailto:sungwook.jung@kimchang.com)

방송·통신

## 방송분야 규제 환경 변화 가속화

정부는 2월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소유·경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2) 기존에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의 가입가구 수의 합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의 기준을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의 3분의 1”의 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체 77개 종합유선방송구역 중 3분의 1 이하의 방송구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가입가구 수에 대한 점유율 규제도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미 FTA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이전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미국 법인의 간접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국인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인이 최대액 출자자인 국내 법인(“의제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에서는 발효일 이후 3년 이내에 의제외국인의 투자제한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미국 법인의 100% 자회사인 한국 법인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이와 같은 간접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유료방송 시장 규모 확대와 매체 간 경쟁의 심화로 차별적인 규제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IPTV법을 통합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여 규제체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근거 법률은 방송법과 IPTV법이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은 방송법에 따라, IPTV사업은 IPTV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 되고 있습니다. 연구반은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비 기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서비스 기반의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분류 체계, 소유·진입 규제, 행위 규제 등 유료방송 사업에 관한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경에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방송분야의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이정운 변호사 jungun.lee@kimchang.com

지식재산권

# 종업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판결

##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에 관한 첫 판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가 종업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주목됩니다 (2014. 2. 21. 선고 2013가합25649 판결).

위 판결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인 “오픈캡쳐”(“이 사건 프로그램”)는 ISDK사가 무료로 배포해오던 컴퓨터 화면 캡처용 프로그램입니다. ISDK사는 위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비상업용/개인용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버전 배포 이후, 기존에 무료로 배포된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는 대화창이 뜨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새로운 대화창에서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새로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해야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DK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료 전환 이후에도 종업원들이 이를 구입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고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해당 기업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ISDK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될 때 일어나는 복제의 경우는,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알리는 창이 나타나도록 하여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으로서, 유료화되기 전 기존의 사용권 계약 조건 하에서 위 알림창에 의한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형물인 RAM에 일시적 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유형물인 RAM에 고정되어 일시적인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새로운 사용권 계약에 사용자가 동의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권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ISDK가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개정되어 2013년 10월 17일 시행된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1심 판결이고 또한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GS, STX에너지 지분 취득

2014년 2월 28일, GS홀딩스와 공동투자자인 LG상사는 일본 Orix Private Equity로부터 STX에너지 지분 64.4% 및 7.5%를 각각 인수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GS홀딩스를 대리하여 거래 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기업결합 신고 등 인허가 취득 및 거래종결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도레이첨단소재, 웅진케미칼 지분 취득

2014년 2월 28일,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등으로부터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주식 56.21%를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법률실사의 수행, 주식양수도 계약 등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한국, 중국, 독일 등에서의 기업결합신고, 거래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IMM PE, 티브로드홀딩스에 투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Private Equity가 운용하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4년 2월 25일, 태광그룹 계열의 티브로드홀딩스의 보통주식 일부를 양수하고 티브로드홀딩스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대상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대주주인 태광산업과의 계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대상 회사의 상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IMM Private Equity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 관련 자문,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거래종결 등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우리은행, Bank Saudara 지분 취득

2014년 1월 28일, 우리은행과 공동투자사인 인도네시아 우리은행(PT Bank Woori Indonesia)은 Arifin Panigoro 및 PT Medco Intidinamika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인 PT Bank Himpunan Saudara 1906("Bank Saudara") 지분 27%와 6%를 각각 인수하였습니다. Bank Saudara와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간의 추가적인 합병을 통하여 우리은행은 Bank Saudara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지분 66.7%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거래 구조 수립,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금융감독원의 승인 등 인허가 취득 및 거래종결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Corning과 삼성디스플레이, 상호 지분 취득

2014년 1월 15일, 미국의 특수유리 및 세라믹 제조기업 Corning Incorporated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Corning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의 지분 42.56%를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같은 날 Corning Incorporated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Corning Incorporated의 지분 7.4%를 취득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Corning 그룹과 삼성 그룹이 상호 간의 핵심사업분야를 재편하고, 이를 통해 global partnership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거래로서, 특히 외국인 투자 및 외환 관련 법령 및 세무적 처리와 관련하여 복잡한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는 Corning 그룹을 대리하여 거래 구조 수립,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거래종결 업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부동산

## S-Oil,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석유비축기지 부지 매입

S-Oil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비축기지 지상 부지의 매각을 위해 실시한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약 28만평의 부지를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Oil은 향후 인수 부지 지상에 중질유 분해시설과 복합 석유화학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위 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S-Oil을 대리하여, 대상 부지의 개발 및 사용에 따른 정부인허가, 환경조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조세 일반

## 사업지주회사는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의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10%가 적용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1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는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은 룩셈부르크 사업지주회사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상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사업지주회사는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사업지주회사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와의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2014년 3월 20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LG U+")의 대리점 6개사가 LG U+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LG U+의 대리점 관련 각종 영업정책들은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거나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고, (2) 가사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것뿐 아니라 이러한 영업손실을 그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특히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2년 9월 27일자 판결이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라 원고들이 증거의 뒷받침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영업손실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판시를 뒤집은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구분 기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액 인정의 특칙인 제57조의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갑을 관계" 논란 속에 기업들의 유통망의 유지를 위한 각종 거래 관행들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이며 적법한 거래 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기업들의 영업 정책 설정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다른 대형 로펌이 수행하여 패소했던 제1심 사건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법률주장을 통해 패소하였던 제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 트위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Twitter, Inc("트위터")를 상대로 제기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8년 4월 29일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데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트위터가 아직 'Twitter'라는 서비스표권을 국내에 등록하기 전이었다는 점,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여행업의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트위터가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부터 twitter 서비스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점,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로 인터넷 여행업을 한 바 없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한 정황도 없는 점,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검색되는 도메인이름의 개수가 3,180개에 이르는 점, 원고는 이전에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등에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련 사실관계의 충실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AWARDS

5개 분야 선두 로펌 선정, 27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4

세계적인 권위의 리걸 미디어 Chambers & Partners가 발행한 세계 각국의 로펌 순위 가이드북 'Chambers Global' 2014년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5개 분야에서 한국 선두 로펌(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Corporate/M&A 분야는 중국 지역에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아래 27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leading individual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의 윤병철 변호사는 최고 등급인 'Star Individual'로 선정되었습니다.



Practice Areas

한국

- Banking & Finance (Band 1)
- Corporate/M&A (Band 1)
-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Band 1)
-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Band 1)
- Intellectual Property (Band 1)

아시아·태평양

- Arbitration (International) (Band 3)

중국

- Corporate/M&A (Foreign Desk) - China

Individuals

한국

- Banking & Finance: 박수만, 조영균, 윤희선, 허익렬
- Corporate/M&A: 정경택, 박종구, 노영재, 허영만, 넬슨 안(Indonesia), 변영훈(Japan), 스테판 몰러(Sweden), 루크 신(USA, Japan)
-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윤병철(Star Individual), 박은영, 정교화
-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정진영, 서정걸, 백창훈
-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장덕순, 양준영, 한상욱, 김재정, 김영, 백만기, 마틴 카거바워(Germany), 김나영

아시아·태평양

- Arbitration (International): 윤병철, 박은영

## 12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IFLR Asia Awards 2014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인 Euromoney 계열의 금융법률잡지사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IFLR)가 2013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시상하는 'IFLR Asia Awards 2014'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한국 최고 로펌으로 선정되어 12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Korea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가 자문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cross-border ABS 발행건이 “올해의 구조화금융 딜(Structured Finance & Securitisation Deal of the Year)”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2월 26일, 홍콩 아일랜드 상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공정거래분야 “Regional Firm of the Year” 수상 - GCR Awards 2014

지난 3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회 'GCR Awards'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Regional Firm of the Year - Asia-Pacific, Middle East & Africa”를 수상하였습니다.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매년 공정거래 분야의 우수 로펌, 경쟁당국, 변호사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입니다. 이번 Awards의 수상자는 GCR 독자들에게 의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중재 분야 국내 1위 선정 - GAR 100 (2014)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제중재 분야에서 세계 100대 로펌 중 3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국제중재 전문지인 GAR이 선정한 2014년 100대 로펌 중, 한국 로펌 중 유일하게 국제중재분야 40위권 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GAR(Global Arbitration Review)은 국제중재 분야 세계적 권위의 전문지로, 해마다 전 세계 중재 100대 로펌을 발표하며 이 가운데 30대 로펌에 대해서는 시상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2년에 세계 30대 로펌 중 24위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4년 1분기 M&A 리그테이블

글로벌 미디어그룹 블룸버그(Bloomberg)가 2014년 1분기 M&A 리그테이블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총 27건, 약 88억 달러의 자문 실적으로 금액 기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금액 기준 5위(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랭크)에 올랐습니다.

South Korea M&A (By Volume)	
Count	Rank
8,856	1

Asia Pacific (ex. Japan) M&A (By Volume)	
Count	Rank
8,856	5

### M&A 법률자문 부문 수상 - 제5회 한국IB대상

한국경제신문이 1월 23일 개최한 '제5회 한국IB대상'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M&A 법률자문 부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한국 IB 대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하는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 평가와 업무 수행의 질적 요인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해서 각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 기업금융 부문 우수자문사 선정 - 제16회 매경증권인상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제16회 매경증권인상'이 1월 16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기업금융 부문 우수 자문사에 수여되는 레이더M상을 삼일회계법인과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매일경제신문 레이더M이 발표한 '2013년 M&A 법률자문 리그테이블'에서, 국내 M&A 법률자문 1위를 차지하는 등 기업금융 부문에서 활발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정화수, 최경선 미국변호사 수상 - The Asian Lawyer All-Star Legal Awards 2014

지난 3월 5일 미국 유명 법률출판사 The American Lawyer가 홍콩에서 개최한 제1회 'The Asian Lawyer All-Star Legal Awards 2014'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화수, 최경선 미국변호사가 각각 Life Science 분야와 Consumer 분야의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Life Science 분야와 Consumer 분야의 로펌 부문에서도 Top 4에 올라 최종 finalist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awards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9개 분야 별로 최고 로펌 1곳과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변호사 2명씩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 ACTIVITIES

## 세계배드민턴연맹의 이용대, 김기정 선수 징계처분 취소 결정

---

김·장 법률사무소는 세계배드민턴연맹의 이용대, 김기정 선수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변호사)는 제프리 존스 미국변호사와 박은영 변호사 등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지난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1년 선수자격 정지를 당한 이용대, 김기정 선수를 대리하여 무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불응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단지 행정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징계 철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두 선수는 오는 9월 인천 아시아게임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법무지원 협약 체결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법무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스페셜올림픽 행사와 참가 선수들에 대한 무상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Newszine May 2014, Issue 2

金·張 法律事務所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우) 110-720  
전화: 02-3703-1114 팩스: 02-737-9091/9092 이메일: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